

대학인권센터협의회 운영안

I. 구성 목적

- 대학 구성원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대학 인권센터 위상과 역할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대학의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고, 당면한 대학의 인권 현안 공동 해결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인권센터협의회를 구성함

II. 근거

-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(국가기관과의 협의)
-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

III. 구성

- 협의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(기관)으로 구성함
 1. 인권센터를 설치한 전국 대학교 중 협의회 참석을 희망하는 대학의 인권센터장 및 담당자 (인권센터 설치 확산에 따라 협의회원 증가·변동 가능)
 2.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(주관부서), 인권사무소
- 대학인권센터협의회장은 위 1항에 해당하는 회원 기관 중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함 (단, 협의회 발족 이후 1년간은 위원회에서 의장 및 간사역할을 담당함)
-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운영지원단(가칭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음

IV. 회의 운영

- 회의는 연 1-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(긴급 현안 발생 시 추가 개최)
- 회의는 협의회장 주재로 개최하되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부서에서 담당함
- 필요한 경우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권역별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음
- 협의회 주요 안건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 관련 부서도 참석할 수 있음

V. 기능 및 역할

- 대학 인권센터 위상강화 및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
- 인권 교육, 정책연구 및 문화홍보 사업 공동 추진 및 공유
- 대학 인권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
- 대학 인권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연대 강화

〈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기능 및 역할 세부 내용(예시) 〉

1. 대학 인권센터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보장
2. 대학 인권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
3. 대학 인권센터 업무 명료화 및 운영 매뉴얼·지침 마련
4. 대학 인권센터 위상강화 및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제반 사항 논의
5. 대학 인권센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 프로그램 실시
6. 상담·조사·구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
7. 인권 교육 자료 공동 개발 및 공유 활성화
8.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등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
9. 대학 구성원 인권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
10. 인권 친화적 대학 문화 조성을 위한 문화홍보 사업 공동 추진 및 홍보 협조
11. 대학별 주요 현안 및 사건 처리 경험, 노하우 공유 및 공동 사례집 발간
12. 주요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